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국 유 재 산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홍남기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천재지변이나 재난,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상 애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인하 근거 마련(안 제29조 제1항·제6항 및 제31조 개정)

- 1) 천재지변이나 재난,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총괄청이 고시를 통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한다”를 “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총괄청이 고시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”를 “제3조제1항 단서”로, “이상”을 “이상.”로 하며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천재지변이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, 경기침체,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한다.
제29조제6항 각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항제6호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.

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료보다”를 “사용료(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보다”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(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은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받은 사용허가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9조(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 법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월 단위, 일 단 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 한 금액으로 <u>한다</u> .		제29조(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 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하되 제6호 단서 의 경우에는 해당 요율이 적용 되는 한도를 정하여 총괄청이 고시할 수 있다.		
1. ~ 5. (생 략)	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6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(「중 소기업창업 지원법」 <u>제3조</u>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해당하 는 업종은 제외한다)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: 1천분의 30 <u>이</u> <u>상 <후단 신설></u>		6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조</u> <u>제1항 단서</u> ----- ----- <u>이</u> <u>상. 다만 천재지변이나 「재난</u> <u>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</u> <u>1호의 재난, 경기침체, 대량실</u>		

제31조(사용료의 조정) 법 제33조 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,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

제31조(사용료의 조정) -----

----- 사용료(제29조제1
항제6호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
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
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보다 --

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

1. · 2. (생략)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153